



## 팩트 시트: 학생들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교육 자원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

대법원이 *Brown 대. 교육위원회* 사건과 관련하여 공교육은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지 6년 후, 미국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학업, 직업 및 인생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자들과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적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 사무국(OCR)은 교육 자원의 제공과 관련하여 연방법이 요구하는 조건, OCR이 자원 불평등을 조사하는 방법, 주 정부, 학군 및 학교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조하고 설명하는 [동료의원에게 보내는 서한\(Dear Colleague Letter\)](#)을 발행했습니다. 또한, 이 지침 문건은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한 교육자 평등 실현 발의를 포함한 행정부의 평등 실현 의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 주 정부, 학군 및 공립 학교에 적용되는 연방법의 요구 사항

- 1964년 시민권법 표제 VI(표제 VI)는 인종, 피부색 및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OCR이 집행하는 연방정부의 시민권법입니다. 표제 VI는 모든 주 정부, 학군 및 카운티 내 공립 학교를 포함한 연방 정부 기금의 모든 수혜자들이 시행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 표제 VI에 따라, 주 정부, 학군 및 학교는 교육 자원을 제공함에 있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에 따라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 표제 VI에 따라 주정부, 학군 및 학교는 교육 자원을 제공함에 있어 특정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의 학생들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는 방침 또는 관행을, 해당 방침 또는 관행이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며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동일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시행할 수 없습니다.

[OCR-00076-KO]



### OCR이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조사하는 방법

- OCR은 학교, 학군 및 주 정부가 교육 자원을 할당함에 있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에 따라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접수된 민원을 조사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시행합니다. OCR은 프로그램, 양질의 교육, 시설, 기술, 교육 자료 및 기타 자원에 대한 학생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양적 및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 OCR은 조사 시 데이터 투명성 개선, 새로운 교육자 지원 시스템과 평등 실현 계획 개발, 새로운 표준 및 평가 전환 등을 포함하여 주 정부, 학군 및 학교에서 자원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취하고 있는 노력을 고려합니다.
-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에 따른 자원 분배 불평등에 대한 원인 및 결과를 규명하고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취하는 주 정부, 학군 및 학교는 표제 VI를 위반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또한 주 정부, 학군 또는 학교에서 스스로 위반 사항을 규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전 학교 및 학군에 걸쳐 할당된 자원을 비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교육적 기회에 대한 상대적인 할당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면 학교 또는 학군의 위치, 현재 시설의 상태, 영어 학습 학생(English language learners) 및 장애 학생과 같이 학생들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더 많거나 더 적은 기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 또는 학군에 주어진 기금 액수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표제 VI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 OCR의 조사는 자원 불평등의 범위와 심각성 및 주 정부, 학군 또는 학교의 방침 또는 관행이 이러한 차별 상황을 더 개선하는 것인지 또는 악화시키는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심각한 인종적 차별을 보이거나 다양한 자원에 대해



인종적 불평등성을 나타내는 주 정부, 학군 또는 학교의 경우 표제 VI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료의원에게 보내는 서한에 제시된 정보는 자원 평등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OCR의 장기적인 접근법을 반영하며 주 정부, 학군 및 학교가 연방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평가 도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서한은 2001년 교육부에서 공표한 [자원 형평성 지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OCR이 고려할 수 있는 교육 자원 및 척도 예시

- 과정, 학업 프로그램 및 과외 활동 기회: 학업, 학과 관련 및 과외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pre-K, 영재교육, 예과(CP) 프로그램, AP/IB(Advanced Placement/International Baccalaureate) 예술 및 스포츠 등)
- 교사 및 지도자: 효과도 데이터, 이직율, 무단 결근, 결원, 교사자격면허, 인증, 훈련, 전문성 개발, 경험 부족, 전문성 결여 및 기타 유사한 지표 등을 통해 측정된 양질의 교사 및 지도자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 기타 학교 직원: 인증, 훈련, 학교 직원 근무 연수 등으로 측정된 중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질의 인력(예: 사서, 전문직 보조원, 생활지도 상담사 및 심리학자)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 학교 시설: 도서관, 강당 및 체육 시설과 같은 특수 공간의 질과 가용성뿐 아니라 과잉 수용, 청결성, 유지보수, 냉난방, 환기, 조명, 장애 학생의 물리적 접근성 등을 통해 측정된 비슷한 물리적 교육 환경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 기술 및 교육 자료: 노트북, 태블릿, 인터넷 연결과 같은 교육용 기술 및 도서관 자료, 교과서, 계산기 및 디지털 자료등과 같은 교육 자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 주 정부, 학군 및 학교에서 법 준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 주 정부, 학군 및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공평한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OCR의 시민권 데이터 모음(Civil Rights Data Collection)에 보고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주 정부, 학군 및 학교의 방침 및 관행을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주 정부, 학군 및 학교는 또한 "가난한 소수 민족의 아동들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부적격하거나 또는 현장 경험이 없는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는 비율이 다른 아동보다 높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의 법적 의무와 관련하여 주 정부 또는 학군이 취한 전략 또는 이러한 주 정부 또는 학군이 고려한 데이터 및 분석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주 정부 및 학군에서 공평한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중요 조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 표제 VI 준수여부 및 자원 형평성 관련 자가 평가를 담당하고 학교 내 자원이 분배되는 방식에 대한 방침을 검토하는 담당 직원을 지정.
  - ✓ 학교 전반에 걸쳐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고, 불합리한 불평등 사항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 있는 조치를 수행하며,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및 학생들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함.
  - ✓ 자원 접근성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을 부모, 학생 및 지역사회 일원에게 통지하고 자원 불평등을 해결함에 있어 교사, 직원, 노조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킴.
  - ✓ 학교 전반에 걸쳐 불평등한 자원 접근 상황을 규명하고 이러한 불평등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자원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은 OCR의 2014년 10월 1일 표제 VI 자원 비교성과 관련하여 동료의원에게 보내는 서한(Title VI Resource Comparability Dear Colleague Letter(OCR 웹사이트 <http://www.ed.gov/ocr/letters/colleague-resourcecomp-201410.pdf> 에서 이용 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적인 기술 지원처 목록은 <http://www.ed.gov/ocr/resourcecomparability.html>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 또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거나 또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학교를 발견하실 경우, OCR의 웹사이트 [www.ed.gov/ocr](http://www.ed.gov/ocr)을 방문해주시거나 (800) 421-3481 또는 [ocr@ed.gov](mailto:ocr@ed.gov)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www.ed.gov/ocr/complaintintro.html](http://www.ed.gov/ocr/complaintintro.html)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 양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